

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 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04. 5.
제출자	거창군수

□ 개정사유

-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,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매 학기 개시 50 !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 시기내로 조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함(3)
- 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(3)
- 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변경함(8)
- 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함(9)

□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 :
-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

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 1 2 조 중 “ 100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” “학습성취도가 ‘ ’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자. ” .

제3 1 3 조 중 “ ” “ . 단, 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” 이 한다.

제8 조 중 “ ” “ ” .

제9 1 3 조 중 “ 100 60 ” 를 “학습성취도가 ‘ ’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 퍼센트 이하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2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3 () ① ()</p> <p>1. ()</p> <p>2. <u>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</u></p> <p>3. <u>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 능 · 제 육 · 단 위 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</u></p> <p>② ()</p> <p>제8 ()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<u>50 일 이내</u>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 () ① ()</p> <p>1. ()</p> <p>3. <u>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전 교과 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 60 이 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 때</u></p> <p>4. ()</p> <p>② ()</p>	<p>제3 () ① ()</p> <p>1. ()</p> <p>2. ----- ----- <u>학습성취도가 ‘ ’ 이상 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50 센트 이 상인 자. 다만,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 의 성적으로 갈음한다.</u></p> <p>3. ----- 기 능 · 제 육 · 단 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</p> <p>② ()</p> <p>제8 () ----- ----- <u>40 일 이내</u>에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 () ① ()</p> <p>1. ()</p> <p>3. ----- <u>학습성 취도가 ‘ ’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센트 이하로 -----</u></p> <p>4. ()</p> <p>② ()</p>			